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목적

- 1)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2)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3) 센터와 이용자,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2. 이용 기간

- 1)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때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2)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3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상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4)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,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~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5)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.
- 6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 이용료 등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- 1)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그 밖의 비용 부담액
 - ① 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 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 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
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시함)
 -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“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”과 같다. 상기 자(이하 “갑”, “을”이라 한다.)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의거 하여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, 각 1통씩 보관한다
- 3)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
※ 재가급여비용은 이용 금액 중 공단 지원 보험료 85% 적용, 본인부담금 15% 적용
 - ①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“240분”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 - ②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.
 - ③ 급여 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,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- 4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
 - ① 대상자가 `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`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③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.

4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: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) 서비스 제공자(이하 “갑”이하 칭함)의 의무

- ① 이용자(이하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- ② “을”의 신병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-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의 제공 의무
- ⑤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) 이용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입소 비용 부담 의무
-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
5. 급여 비용 청구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.
- 2) 단,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.
- 3) 급여비용은 `을`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 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.
- 4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) 각항에 의거 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

1)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
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 보호자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 하여야 한다.

2)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이용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.
-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7. 계약의 해제: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-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-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